

협조사항 관련 규정

[역 업무 운영예규]

제36조(승강장 안전문(PSD) 고장인 경우의 취급) 안전문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자동 개폐되지 않을 경우 역장은 열차관제사에게 보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승객취급을 위해 열차가 정차하였으나 승강장 안전문(PSD)이 자동열림 또는 닫힘이 안 될 경우에는 수동취급 하여야 한다.
2. 수동개폐가 안될 경우 승강장 안전문(PSD)을 강제 개방하여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안전문 전체가 닫히지 않을 경우 열차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바이패스(By-Pass) 스위치를 취급하고 승강장 열차감시와 승객을 유도하여야 한다.
3. 승강장 안전문(PSD)개별 고장인 경우 역장은 고장난 승강장 안전문(PSD)을 수동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개폐 불가능 또는 개방상태를 유지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PSD) 개별제어반의 단락스위치를 '단락' 취급한 후 열차를 감시하면서 해당 안전문을 개방하여 둘 수 있다.

제34조(열차감시) ①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차의 도착, 출발 및 승객의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1. 상, 하선의 막차
2. 대용폐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할 때
3. 승객을 취급하는 열차가 출입문이 1개 이상 닫히지 않은 상태로 착발 할 때
4. 승강장 안전문(PSD) 고장 시. 단, 열차관제사 지시에 따라 안전문 고장 조치중인 기술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5. 열차의 감시가 특히 필요하여 열차관제사가 지시하였을 때

② 감시자는 전호기 또는 전호등을 휴대하고 상황에 따라 기관사가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거나 출발지시 전호를 하여야 한다.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관리규정]

제22조(장애복구시 준수사항) ① 승강장안전문설비 보수자는 장애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승강장안전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여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해당역에 승강장 안전요원 지원요청 후 신속히 종합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장애의 상황에 따라 응급복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종료 시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시작과 종료사항에 대하여 종합관제센터장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취급규정]

제153조(출발지시 전호) ①역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감시를 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출발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관사에게 사유를 통보하거나 정지수신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유소멸 시 출발지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단, 열차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승강장안전문 고장 조치중인 기술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4.11.25, 2012.10.2, 2014.12.26)

②제1항의 출발지시 전호는 열차 있는 방향의 한팔을 머리위로 뺀 원형을 그리는 것으로 하며 기관사가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